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세청 주요 점검 항목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초과,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초과 환급금 의료비 차감 여부**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를 필히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등에 대해 인적공제 공제 신청불가 ○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24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
	주요 Q&A
	<p>Q1.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신청이 가능한지? A1.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Q2.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Q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p> <p>Q4.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A4.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것을 말함.</p>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19년~'23년 취득분 : 5억원, '14년~'18년 취득분 : 4억원, '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부부는 세대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 무조건 합산하여 판단함에 유의.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주요 Q&A
	<p>Q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면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인지?</p> <p>A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자료일 뿐,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p> <p>Q2.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p> <p>A2.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p> <p>Q3.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p> <p>A3.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음.</p>
주택마련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
	주요 Q&A
	<p>Q1. 올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p> <p>A1. 연도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p> <p>Q2.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p> <p>A2.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가가능함.</p>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5년~2026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공제 가능
	주요 Q&A
	<p>Q1. 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을 3년간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는지 ?</p> <p>A1. 투자금액에 대해서 어느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3년간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임.</p>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주요 Q&A
	<p>Q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남편이 결제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신청할 수 있는지?</p> <p>A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신청할 수 없음.</p> <p>Q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배우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신청할 수 있는지?</p> <p>A2. 신용카드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배우자로 몰아서 공제신청할 수 없는 것임.</p>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사후환급금 등 포함)는 공제받을 수 없음.(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신청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신청할 수 없음
	주요 Q&A
	<p>Q1.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p> <p>A1.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본인이 공제신청할 수 있음.</p> <p>Q2. 만 60세 미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p> <p>A2.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음.</p> <p>Q3. 자녀의 의료비는 맞벌이부부 중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 지?</p> <p>A3.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p> <p>Q4. 부양가족이 2023.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4년에 수납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p> <p>A4.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공제 가능함.</p>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및 Q&A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불가 ○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끼리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주요 Q&A
	<p>Q1.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A1.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가능함.</p> <p>Q2. 자녀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A2.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부모인 근로자가 지출한 자녀의 대학교등록금은 부모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p>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주요 Q&A
	<p>Q1.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A1.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음.</p> <p>Q2.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A2.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 가능함.</p> <p>Q3.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신청을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3. 기부금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음.</p>
월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주요 Q&A
	<p>Q1.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1.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말현재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p> <p>Q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p> <p>Q3.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3.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됨.</p>